

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 
(김광수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818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8월 6일  
발 의 자 : 김광수, 김기덕, 김화숙, 김제리,  
권영희, 유정희, 오중석, 임종국,  
박상구, 이병도, 김경영, 채유미  
의원 (12명)

### 1. 제안이유

현행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추진실적의 활용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음. 이에 시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의 점검·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

### 2. 주요골자

가.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직전 수립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·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(안 제4조제3항 신설)

나.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함(안 제4조제4항 신설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직전 수립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·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
- 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